

문서번호	장애인복지과-2351
등록일자	2026. 2. 5.
결재일자	2026. 2. 5.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팀장	장애인복지과장	보건복지국장
			전결 2026. 2. 5.
김정식	원경자	이정희	이재홍
협조			

2026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개 요

- ◆ 지원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장애인
- ◆ 사 업 비 : 100,000천원(10명 규모)
- ◆ 지원내용 : 1인당 10백만원, 1회 한하여 지급
 - ▶ 신청장소 : 자립 주소(예정)지 관할 구군(장애인업무 부서)
 - ▶ 신청기한 : 퇴소 후 1년 이내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장애인복지과]

2026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 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1조(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II 추진배경

-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시설 퇴소자에게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III 연도별 지원현황

〈 자립정착금 지급기준 변경 내용 〉

- (기준) '10 ~ '23년: 거주시설 퇴소 → 자립생활주택 입주
- (변경) '24년 이후: 거주시설 퇴소 → 자립생활주택 입·퇴주 → 지역사회 자립

(단위: 명/백만원)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지원인원	190	3	3	4	3	1	9	3	26	22	22	22	27	23	20	1	1
1인당 지원금액	-	5	5	5	5	5	6	7	8	10	10	10	10	10	10	10	10
지원총액	1,721	15	15	20	15	5	54	21	196	220	220	220	270	230	200	10	10

탈시설 자립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적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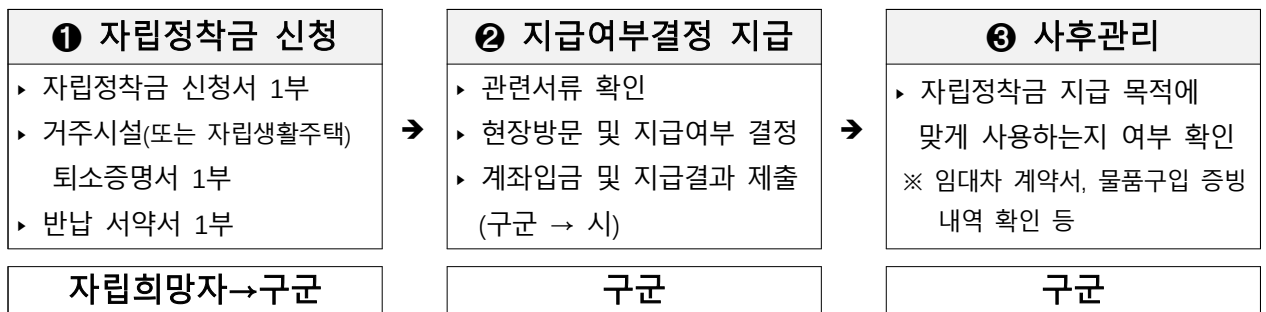
기준 변경

IV 세부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0백만원, 1회에 한함(타시도 포함)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대상
 - 관내 장애유형별·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에 1년 이상 거주
 -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18세 이상 장애인
- ※ 자립생활 정착금 수령 후 2년 이내 원가정 복귀 또는 시설 재입소 시 지원금 환수
- 지원기준 : 입소기간, 장애정도 순으로 예산범위 내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구군 → 대상자)

□ 신청절차



① (자립희망자) 자립정착금 신청

- 신청장소 : 자립 주소(예정)지 관할 구군 장애인 업무부서 신청
- 신청기한 : 퇴소 후 1년 이내
- 구비서류
 - (서식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신청서 1부
 - (서식 2) 시설 퇴소 증명서(시설장 확인) 1부
 - (서식 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반납 서약서 1부

② (구군)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 구군은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사실 및 취업 등 퇴소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
 - 임대차계약서, 예식장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물품구입 증빙내역 등
- 지급여부 결정 후 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③ (구군) 사후관리

- 자립정착금 지원 후 구군에서는 퇴소 장애인이 개인별 자립 계획에 맞게 정착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 2년 이내 원가정 복귀 또는 시설 재입소 시 지원금 환수 조치

V

행정사항

- (구군) 자립희망자 수요 조사 : 2026. 2월, 8월
- (시) 구군별 보조금 교부 및 지출 : 2026. 3월, 9월
- (구군)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결과 제출 : 대상자 계좌입금 완료 시
- (구군) 보조금 정산 : 2027. 2월